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14
----------	---------

제출연월일	2005. 4.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 골자

-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월20만원, 연간 50만원으로 조정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
-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함.
(안 제6조제2항)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시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 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및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하향조정 함.(안 별표1)

■ 개정근거

-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 시달(환경정책과-17678, 2004.12.29)
-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환경부예규 제257호,2005.02.11)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
조례”를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재처분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현금이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20만원, 연간50만원을 초과한 경우(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
5.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
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제1항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의 단
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①~③ (현행과 같음) <u>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재처분하여야 한다.</u></p>
<p>제6조(신고포상금지급) ① (생략) <u>② 1인당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u></p>	<p>제6조(신고포상금지급) ① (현행과 같음) <u>② 현금이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u></p>
<p>제7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부과) ① (생략) ② 위반행위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u>제5조</u>를 준용한다.</p>	<p>제7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4조</u>----- --.</p>
<p>제12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①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1.</u> (생략) <u>2.</u> (생략) <u>3.</u>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12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① (현행과 같음) <u>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2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u> <u>2. (현행 제1호와 같음)</u> <u>3. (현행 제2호와 같음)</u> <u>4. (현행 제3호와 같음)</u> <u>5.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u></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 상 금 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과 태 료				포상 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를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2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3

과 태 료				포상 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	10	30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small>(단위 : 만원)</small>					[별표 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small>(단위 : 만원)</small>				
과태료					과태료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포상 금액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 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 포한 때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 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 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 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 상의 집단급식소	<u>100</u>	<u>200</u>	<u>300</u>	<u>20</u>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 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 상의 집단급식소	<u>50</u>	<u>100</u>	<u>200</u>	<u>10</u>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 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 접객업소 또는 상시 1 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u>50</u>	<u>100</u>	<u>200</u>	<u>10</u>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 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 접객업소 또는 상시 1 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u>30</u>	<u>50</u>	<u>100</u>	<u>5</u>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 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 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 단급식소	<u>30</u>	<u>50</u>	<u>100</u>	<u>7</u>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 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 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 단급식소	<u>10</u>	<u>30</u>	<u>50</u>	<u>3</u>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 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 의 집단급식소	<u>10</u>	<u>30</u>	<u>50</u>	<u>3</u>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 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 의 집단급식소	(삭 제)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 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u>100</u>	<u>200</u>	<u>300</u>	<u>20</u>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 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u>50</u>	<u>100</u>	<u>200</u>	<u>10</u>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 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 의 목욕장인 경우	<u>50</u>	<u>100</u>	<u>200</u>	<u>10</u>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 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 의 목욕장인 경우	<u>30</u>	<u>50</u>	<u>100</u>	<u>5</u>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 인 경우	<u>30</u>	<u>50</u>	<u>100</u>	<u>7</u>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 인 경우	<u>10</u>	<u>30</u>	<u>50</u>	<u>3</u>

현행					개정안				
과태료				포상 금액	과태료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음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음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2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7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현행				개정안					
과태료			포상 금액	과태료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 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 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u>100</u>	<u>200</u>	<u>300</u>	<u>20</u>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u>50</u>	<u>100</u>	<u>200</u>	<u>10</u>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u>50</u>	<u>100</u>	<u>200</u>	<u>10</u>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u>30</u>	<u>50</u>	<u>100</u>	<u>5</u>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u>30</u>	<u>50</u>	<u>100</u>	<u>7</u>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u>10</u>	<u>30</u>	<u>50</u>	<u>3</u>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u>100</u>	<u>200</u>	<u>300</u>	<u>20</u>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u>5</u>	<u>10</u>	<u>30</u>	<u>2</u>